

# 수급자격 교육자료

관련문의  
☎ 1350



# 실업급여 제도의 의의

고용보험 가입자에게 **실업**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,  
 일정한 요건하에 급여를 지급하는 **보장성 보험의 일종**

실직 기간 동안 **생계안정을 도모**하면서,  
**취업역량 제고**와 **재취업 활동**을 할 수 있도록 지원



## 보장성 보험

- 보험사고 발생자에 보험금 지급
- 예: 고용보험, 건강보험

## 저축성 보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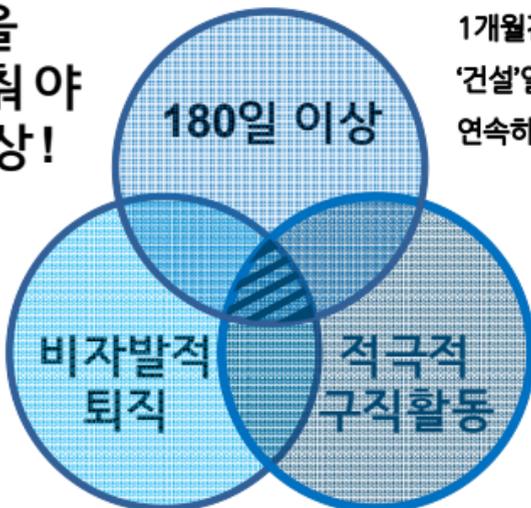
- 수급연령 도래 시 모두에게 보험금 지급
- 예: 국민연금

# 구직급여 수급 요건



3가지  
요건을  
모두 갖춰야  
수급대상!

피보험단위기간



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 
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
(일용근로자는 수급신청일 이전  
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또는  
'건설'일용인 경우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 
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함)

이직 사유

해고, 폐업, 계약만료,  
정년 등 불가피한 퇴직  
(단, 개인사정, 본인 귀책사유로  
해고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)

재취업 노력

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 
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 
적극적 구직활동 필요

# 구직급여 지급액 및 지급일수

## 지급액

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

최저임금의  
90% 수준

1일 지급기준액

하한액 60,120  
상한액 66,0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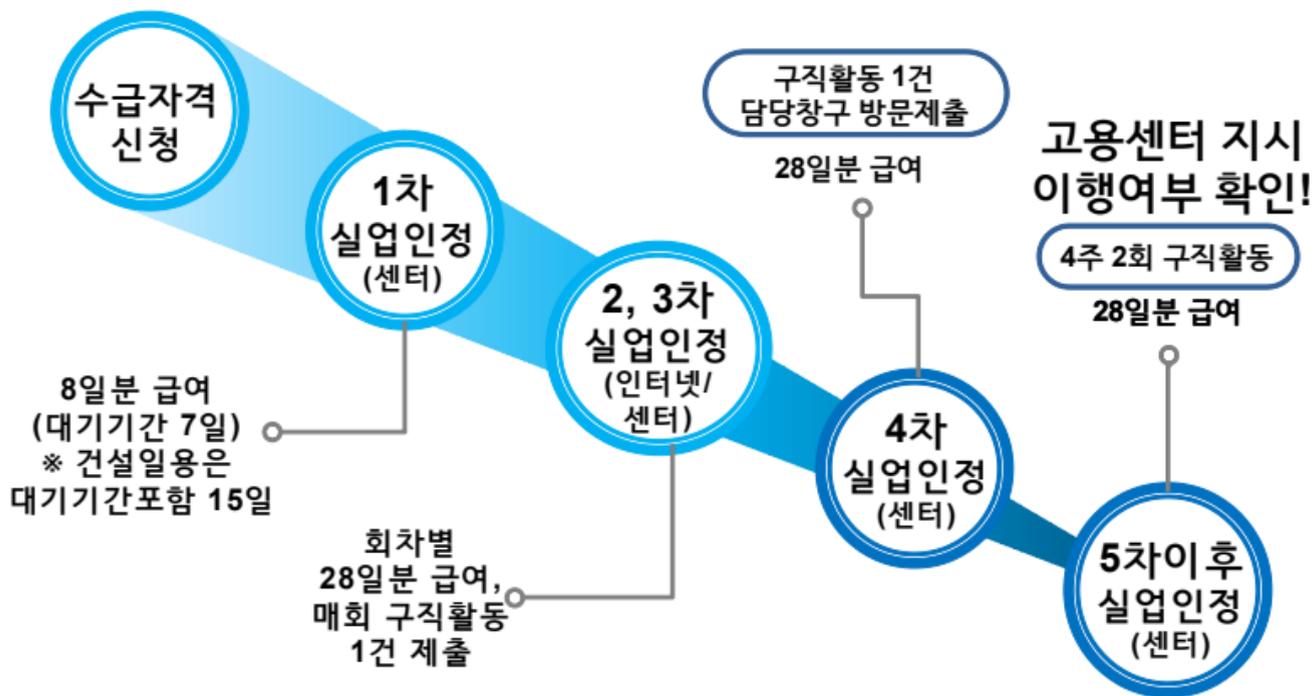
\*일소정근로시간  
8시간 근무자 기준

## 지급일수

지급일수는 퇴직당시 만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

	1년미만	1년~3년	3~5년	5~10년	10년이상
50세 미만	120일	150일	180일	210일	240일
50세 이상 및 장애인	120일	180일	210일	240일	270일

# 단계별 실업인정 흐름



## 실업급여(구직급여) 지급 절차



### 설명회 참석



- 수급자격인정 신청서
- 구직신청서
- 개인정보 동의서

고용보험 홈페이지([www.ei.go.kr](http://www.ei.go.kr))에서 '1차 실업 인정 교육자료'를 내려받아 자율적으로 학습한 후 지정된 1차 실업인정일에 수강확인서를 방문하여 제출 시 집체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.

수급  
신청

2주 후

1차  
실업인정

- ▶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전송으로 구직활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!

✓ 인터넷 실업인정  
(또는 방문)  
✓ 실업급여 28일분 지급

✓ 인터넷 실업인정  
(또는 방문)  
✓ 실업급여 28일분 지급

4주 후  
구직활동  
4주 1회

2차  
실업인정

4주 후  
구직활동  
4주 1회

3차  
실업인정

## 4차, 5차 부터 고용센터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개입!

- ✓ 방문 실업인정  
(인터넷 불가)
- ✓ 일자리상담 필수
- ✓ 실업급여 28일분 지급

- ✓ 방문 실업인정 또는  
인터넷신청
- ✓ 실업급여 28일분 지급

4주 후

구직활동  
4주 1회

4차  
실업인정

4주 후

구직활동  
4주 2회

5차  
실업인정  
이후

근로사실 미신고,  
담당자지시 사항

2회 이상

불이행자

실업급여 중지!

## 조기재취업수당

구직급여 수급 중 대기기간(실업신고일부터 7일)이 지난 후,  
**소정급여일수의 1/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** 하는 경우 지급

\* 단, 자영업자는 수급요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청구담당자와 상담



-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**1/2이상** 남음
- **12개월 이상** 계속 고용되는 경우
- ✓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 활동계획서 제출과 재취업 활동으로 실업인정 1회 이상 필요

잔여  
지급일수의  
1/2 지급

지급  
제외

- 최종 이직한 사업과 관련한 사업주에 재고용
- 실업신고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
-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



국가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

**국민연금 납부액의 일부를 보조**해주는 제도

대상

-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 
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
- 재산·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

절차

- ① 신청·접수  
(국민연금공단, 고용센터에서는 1차 실업인정 신청 시 까지만 접수 가능)
- ② 지원대상 결정 및 통보(국민연금공단)
- ③ 신청자가 보험료 25% 완납(본인부담) → 국고보조금(75%) 지원

## 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용 및 조치

**부정수급**은 취업유무·소득 미신고, 이직사유 허위기재,  
취득·상실일 허위신고, 구직활동 허위신고 등의

**거짓·부정한 방법**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를 말함

### 부정수급 의심자 적발



- 전산망에 의한 자동경보 시스템 가동
- 실제 구직활동 여부 확인
- 사업장 정기 점검
- 신고자 포상금 제도
- 검찰 및 경찰 기획조사



### 부정수급 적발 시 조치

- 실업급여 지급 중지
-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(수급액의 최대 5배)
- 1년 이하징역 / 300만원 이하벌금
- 사업주 공모 시 연대처벌 및 형사고발

##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



-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총2일 근로  
실업인정 당시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사실 미신고  
이후 건설회사에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2일을 신고하면서 적발되어 실업급여  
전체금액 반환



- 인터넷 실업인정을 받던 중 재취업 하였으나, 신고하지 않고 근무하면서  
인터넷 실업인정으로 실업급여 수급(IP확인을 통해 적발, 전액 반환 및 추가징수)



- 개인으로 이직한자를 권고사직으로 허위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  
사업장에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직사유를  
정정 신고하였고 이에 부정수급 처분 및 반환명령